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23호 2018. 5. 18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고시

- 남원시 고시 제2018-61호 남원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고시 ----- 1
- 남원시 고시 제2018-62호 남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(덕음산 탐방로 조성사업) ----- 9
- 남원시 고시 제2018-63호 남원도시관리계획(시설:문화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---- 10

공고

- 남원시 공고 제2018-877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--- 11
- 남원시 공고 제2018-878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--- 17
- 남원시 공고 제2018-879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--- 3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18 - 61호

남원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남원 신정지구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결정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2018년 5월 18일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26	지구단위계획 구역 (신정지구)	남원시 신정동 911번지 일원	22,505.2	-	22,505.2	남원시 고시 제2012-25호 (2012.04.27.)	-

2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22,505.2	-	22,505.2	100.0	
도시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1,929.0	-	1,929.0	8.1	
	일반사업지역	18,582.2	-	18,582.2	83.5	
	자연녹지지역	1,994.4	-	1,994.4	8.4	

나.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: 변경없음

1) 미관지구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 구 명	지 구 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연 장 (m)	폭 원 (m)	최 초 결 정 일	비고
기정	14	미관지구	일반 미관지구	대로1-11호 선변	15,120	1,260	12	전라북도 고시 제2000-415호 (2000.12.29)	
기정	15	미관지구	일반 미관지구	대로3-7호 선변	14,520	1,210	12	전라북도 고시 제2000-415호 (2000.12.29)	

2) 고도지구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 구 명	지 구 의 세 분	위 치	고도제한 내 용	면 적 (㎡)	최 초 결 정 일	비고
기정	43	고도지구	최고 고도지구	신정동 547번지 일원	8층 이하	28,200	전라북도 고시 제2000-415호 (2000.12.29)	
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(변경없음)

도로 총괄표

유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 계	기정 9	3,623 (631)	79,166 (8,513.1)	4	487 (429)	4,870 (4,419.4)	-	-	-	5	3,136 (202)	74,296 (4,093.7)
대로	기정 1	2,920 (146)	73,000 (3,722.2)	-	-	-	-	-	-	1	2,920 (146)	73,000 (3,722.2)
소로	기정 8	703 (485)	6,166 (4,790.9)	4	487 (429)	4,870 (4,419.4)	-	-	-	4	216 (56)	1,296 (371.5)

※ 주) ()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

도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3	7	25	주간선 도로	2,920 (146)	장국리 산9-6도	신정동 785-10구	일반 도로	순창선	전라북도고시 제252호 (86.12.31)	
변경	소로	1	29	10	국지도 도로	43	신정동 917대	신정동 928대	일반 도로	-	〃	
변경	소로	1	30	10	국지도 도로	103 (45)	신정동 927도	신정동 52-1대	일반 도로	-	〃	
변경	소로	1	31	10	국지도 도로	141	신정동 927도	신정동 924도	일반 도로	-	〃	
변경	소로	1	32	10	국지도 도로	205	신정동 931도	신정동 927도	일반 도로	-	〃	
변경	소로	3	70	6	국지도 도로	205 (12)	신정동 931도	신정동 산6임	일반 도로	-	〃	
변경	소로	3	203	6	국지도 도로	11	신정동 925도	신정동 926도	일반 도로	-	〃	
변경	소로	3	204	6	특수 도로	14	신정동 925도	신정동 927도	보행자 도로	-	〃	
변경	소로	3	205	4	특수 도로	19	신정동 928도	신정동 29-25도	보행자 도로	-	〃	

2)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31	주차장	신정동 908 차	236.2	-	236.2	남원시고시 제2012-97호 (2012.12.07)	노외 주차장

나. 공간시설

1) 공원

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2	공원	소공원	신정동 902공 일원	723.8	-	723.8	남원시고시 제2012-97호 (2012.12.07)	
변경	13	공원	소공원	신정동 918공 일원	228.5	-	228.5	남원시고시 제2012-97호 (2012.12.07)	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가구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 치	면적(㎡)	
	계	9,954.7		-	9,954.7	
-	상업1	2,455.6	1	신정동 898 대	603.8	
			2	신정동 899 대	603.9	
			3	신정동 900 대	603.9	
			4	신정동 901 대	644.0	
	상업2	2,709.9	1	신정동 909 대	423.8	
			2	신정동 910 대	403.6	
			3	신정동 911 대	827.4	
			4	신정동 912 대	575.1	
	상업3	2,680.9	1	신정동 903대	480.0	
			2	신정동 904대	814.9	
			3	신정동 905대	430.0	
			4	신정동 906대	395.9	
			5	신정동 907대	440.0	
	상업4	1,404.4	1	신정동 914대	600.1	
			2	신정동 915대	410.1	
			3	신정동 916대	435.1	
	상업5	380.1	1	신정동 917대	559.2	
	상업6	323.8	1	신정동 919대	380.1	
			2	신정동 920대	323.8	
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·결정 조서 “변경”
 가.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구분	계 획 내 용
허용용도	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「남원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1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 #1 상업용지 허용용도 분류표에 의한 건축물
권장용도	· 1층 권장용도 : 허용용도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
불허용도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남원시 도시계획조례」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9 1호 가목의 건축물

【별표 # 1】 상업용지 허용용도 분류표

구분	계 획 내 용
S1 (상업 1~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7호 판매시설(도매시장 제외)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10호 교육연구시설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11호 노유자시설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13호 운동시설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)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24호 방송통신시설 ▪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(고시원 제외)

가.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(변경없음)

구분	건폐율	용적률	높 이	비 고
	80% 이하	800% 이하	8층 이하	(법규정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따름)

가.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(변경)

○ 건축한계선

-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,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,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.
-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,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.

○ 건축지정선

- 건축물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.
- 건축물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 그 수직면에 접하여야 한다.

-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·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.

⇒ 변경

-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(대지안의 공지)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, 대지내 공지는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.

나. 건축물의 배치 (변경없음)

○ 건축물의 전면 방향

-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.

-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 한다.

-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.

다. 건축물의 형태 (변경없음)

○ 건축물의 외벽

- 건축물의 전면과 측·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 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 단,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.

- 건축물 전면부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 1/2 이상은 투시형 벽으로 처리토록 하며, 셔터 설치시에도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한다. 단, 건축물용도,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

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.

○ 1층 바닥높이

-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하며,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.

○ 지붕, 옥상 등

-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,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. 단,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, 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.
- 옥상에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권장한다.

○ 담장설치를 금지한다.(단, 인접대지 및 도로 등과 단차발생시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)

○ 옥외광고물

-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, 「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

라. 건축물의 색채 (변경없음)

○ 밀도 높은 개발에 의한 수직감을 완화하며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색채를 적용하고 자연스러운 배색체계가 형성되도록 계획한다.

-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입면을 하층부(지상1층에서부터 최대 2개층), 상층부(하층부를 제외한 부분)로 구분하며 하층부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.
-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색채를 적용하여 톤 배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
○ 자연재질 사용을 권장하며 재료 자체의 질감과 색채 표현이 드러나도록 계획하여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. 단, 자연재질을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한다.

○ 쇼윈도우나 옥외광고물 등의 색상들이 지나치게 돌출 되지 않도록 한다.

○ 상업용지의 색채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- 주조·보조·강조색은 R-YR-Y계열의 색상을 적용한다.
- 중·저채도 위주의 색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.

6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(변경)

구분		계 획 내 용
대지 내 공지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간으로 확보한다. -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한다.
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. -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토록한다.
차량 출입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,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도로의 각각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.)
주차장의 설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대지 내 조경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, 이면부의 공지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,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남원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 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. •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연계하여 조경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.
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지내에 건축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, 이면부의 공지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,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남원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. •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연계하여 조경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.

남원시 고시 제2018 - 62호

남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(덕음산 탐방로 조성사업)

덕음산 탐방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남 원 시 장
2018년 5월 18일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유원지)

나. 사업의 명칭 : 덕음산 탐방로 조성사업

2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
가. 위 치 : 남원시 어현동 37-99번지

나. 사업규모 : 조경시설 246m²(테크로드 246m²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남원시장(산림과)

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	지목	면적(m ²)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본번	부번	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어현	37	99	원	267,956	246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-	-	-	-

남원시 고시 제2018 - 63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문화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(☎ 063-620-645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5월 18일

남 원 시 장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문화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(m ²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2	문화시설	남원시 쌍교동 260번지 일원	-	증)3,380	3,380	-

2. 남원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문화시설) 결정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위치	면 적(m ²)	결 정 사 유
신설	2	남원시 쌍교동 260번지일원	3,380	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월행복센터를 공영주차장 중 미 조성된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고자 주차장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자 함.

3. 남원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문화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: 실음생략

남원시 공고 제2018-877호

『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5월 17일

남 원 시 장

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개정이유

남원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인상 (안 제6조, 안 별표1)

- 당초 2만원 ⇒ 변경 3만원

구분	기준	운영 실수	기준 인원	이용료(원)		비고
				주중	주말	
캠핑장	면	31면		30,000	30,000	

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산림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산림과 백두생태담당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(063-620-6715), 이메일(cheesedog@korea.kr), 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(☎063-620-57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

2.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1부. 끝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관한 의견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. 5. .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 : 산 립 과 장

1. 개정이유

남원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인상 (안 제6조, 안 별표1)

구분	기준	운영 실수	기준 인원	이용료(원)		비고
				주중	주말	
캠핑장	면	31면		30,000	30,000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5. . ~ 2018. 6. . 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
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설이용료 (제6조 관련)

구분	기준	운영 실수	기준 인원	이용료(원)		비고
				주중	주말	
숙박시설	커플실	4실	2명	80,000	100,000	
	가족실	1실	4명	100,000	120,000	
	단체실	1실	8명	200,000	220,000	
캠핑장	면	31면		30,000	30,000	

남원시 공고 제2018-878호

『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5월 17일

남 원 시 장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휴관일 신설, 입장요금을 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연계할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객 증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휴관일 신설 (안 제5조)

- 설날과 추석날

나. 입장권 및 이용권 서식 개정 (안 제7조, 별지 제1호 서식)

다. 입장료 감면 규정 신설 (안 제8조, 안 별표 1)

- 단체 입장객 20명 초과 시 인솔자 1명 : 면제

-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,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,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당일 숙박 이용객 : 면제

- 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사람 : 할인

라. 시설이용의 예약 및 반환 규정 개정 (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산림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산림과 백두생태담당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(063-620-6715), 이메일(cheesedog@korea.kr), 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(☎063-620-57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
 2.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부.
 끝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관한 의견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. 5. .
 제출자 : 남 원 시 장
 제안설명자 : 산 립 과 장

1. 개정이유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휴관일 신설, 입장요금을 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연계할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객 증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휴관일 신설 (안 제5조)
 - 설날과 추석날
- 나. 입장권 및 이용권 서식 개정 (안 제7조, 별지 제1호 서식)
- 다. 입장료 감면 규정 신설 (안 제8조, 안 별표 1)
 - 단체 입장객 20명 초과 시 인솔자 1명 : 면제
 -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,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,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당일 숙박 이용객 : 면제
 - 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사람 : 할인
- 라. 시설이용의 예약 및 반환 규정 개정 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8. 5. . ~ 2018. 6. . (20일간)
 - 결 과 :
 - 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전시관”이란 전시관, 곤충온실, 물놀이터,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,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.

제2조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“시설사용””을 ““시설이용””으로, “사용하는”을 “이용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설날과 추석날

제7조제1항 중 “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”를 “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,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 제목 “(입장료 면제)”를 “(입장료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

“다음”을 “시장은 다음”으로, “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경우는 입장료를 면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2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단체 입장객 20명 초과 시 인솔자 1명

13.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,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,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당일 숙박 이용객

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.

1. 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.
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0조 제목 “(시설 사용료 등)”을 “(시설 이용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시설 이용료 등) 전시관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. 다만,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민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2.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2조 중 “시설사용료”를 “시설 이용료”로 한다.

제13조 제목 “(시설사용의 예약 및 반환)”을 “(시설이용의 예약 및 반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설사용”을 “시설이용”으로, “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”을 “이용료를 신용카드, 계좌입금, 현금 중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”로, “입금하여야”를 “납부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반환”을 “환불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용”을 “이용”으로, “전액”을 “전액 환불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용일”을 “이용일”로, “사용허가를 취소한”을 “이용자가 취소하였을”로, “전액”을 “전액 환불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용일”을 “이용일”로, “사용허가를 취소한”을 “이용자가 취소하였을”로, “80퍼센트”를 “80퍼센트 환불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사용일”을 “이용일”로, “사용허가를 취소한”을 “이용자가 취소하였을”로, “5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 환불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이용 당일 취소 및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: 미 환불

제14조 제목 “(사용제한)”을 “(이용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용”을 각각 “이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허가를”을 “이용을”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입 장 료 (제7조 관련)

구분	입장료(관람료)						비 고
	어른		청소년·군인		어린이		
	개인	단체	개인	단체	개인	단체	
전시관	2,000	1,500	1,500	1,000	1,000	500	- 어른 : 19세 이상 64세 이하 - 청소년·군인 :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- 어린이 : 7세 이상 12세 이하 - 단체 : 20명 이상
연계할인	1,000	800	800	500	500	300	

※ 연계할인은 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원항공우주전문대 당일의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체험시설이용료 (제7조 관련)

구분	시설이용료						비 고
	어른		청소년·군인		어린이		
	개인	단체	개인	단체	개인	단체	
호랑이 라이더관	1,000	500	1,000	500	1,000	500	- 어른 : 19세 이상 64세 이하 - 청소년·군인 :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- 어린이 : 7세 이상 12세 이하 - 단체 : 20명 이상
서클영상관	2,000	1,500	2,000	1,500	1,500	1,000	
곤충온실	1,000	500	1,000	500	1,000	500	

통합입장료 (제7조 관련)

구분	통합입장료						비 고
	어른		청소년·군인		어린이		
	개인	단체	개인	단체	개인	단체	
통합입장료	5,000	3,000	4,000	2,000	3,000	2,000	- 어른 : 19세 이상 64세 이하 - 청소년·군인 :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- 어린이 : 7세 이상 12세 이하 - 단체 : 20명 이상

※ 통합입장료 : 전시관과 체험시설 3종을 이용할 경우 할인된 입장료임.

[별지 제1호 서식]

입 장 권 (제7조 관련)

1. 전시관

	20cm	
편 철 부 분	NO. _____	전시관 입장권 NO. _____
	전시관 입장권(보관용)	(대표사진)
	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	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
	·청소년(" 1,500/ " 1,000)	·청소년(" 1,500/ " 1,000)
	·어린이(" 1,000/ " 500)	·어린이(" 1,000/ " 500)
	년 월 일	년 월 일
	남원시장	남원시장
		※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
2cm	6cm	12cm

이 용 권 (제7조 관련)

2. 호랑이 라이더관

	20cm	
편 철 부 분	NO. _____	입장권 NO. _____
	호랑이 라이더관 입장권(보관용)	(대표사진)
	·어 른(개인1,000/단체500)	·어 른(개인1,000/단체500)
	·청소년(" 1,000/ " 500)	·청소년(" 1,000/ " 500)
	·어린이(" 1,000/ " 500)	·어린이(" 1,000/ " 500)
	년 월 일	년 월 일
	남원시장	남원시장
		※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
2cm	6cm	12cm

이 용 권 (제7조 관련)

3. 서클 영상관

20cm							
6cm 편 철 부 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 NO. _____ 서클 영상관 입장권(보관용) 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 ·청소년(" 2,000/ " 1,500) ·어린이(" 1,500/ " 1,000) 년 월 일 남원시장 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절 취 선 </td> <td style="width: 45%; 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 입장권 NO. _____ (대표사진) 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 ·청소년(" 2,000/ " 1,500) ·어린이(" 1,500/ " 1,000) 년 월 일 남원시장 ※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2c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6c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12cm</td> </tr> </table>	NO. _____ 서클 영상관 입장권(보관용) 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 ·청소년(" 2,000/ " 1,500) ·어린이(" 1,500/ " 1,000) 년 월 일 남원시장	절 취 선	입장권 NO. _____ (대표사진) 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 ·청소년(" 2,000/ " 1,500) ·어린이(" 1,500/ " 1,000) 년 월 일 남원시장 ※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	2cm	6cm	12cm
NO. _____ 서클 영상관 입장권(보관용) 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 ·청소년(" 2,000/ " 1,500) ·어린이(" 1,500/ " 1,000) 년 월 일 남원시장	절 취 선	입장권 NO. _____ (대표사진) 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 ·청소년(" 2,000/ " 1,500) ·어린이(" 1,500/ " 1,000) 년 월 일 남원시장 ※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					
2cm	6cm	12cm					

이 용 권 (제7조 관련)

4. 곤충온실

20cm							
6cm 편 철 부 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 NO. _____ 곤충온실 입장권(보관용) ·어 른(개인1,000/단체500) ·청소년(" 1,000/ " 500) ·어린이(" 1,000/ " 500) 년 월 일 남원시장 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절 취 선 </td> <td style="width: 45%; 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 입장권 NO. _____ (대표사진) ·어 른(개인1,000/단체500) ·청소년(" 1,000/ " 500) ·어린이(" 1,000/ " 500) 년 월 일 남원시장 ※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2c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6c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12cm</td> </tr> </table>	NO. _____ 곤충온실 입장권(보관용) ·어 른(개인1,000/단체500) ·청소년(" 1,000/ " 500) ·어린이(" 1,000/ " 500) 년 월 일 남원시장	절 취 선	입장권 NO. _____ (대표사진) ·어 른(개인1,000/단체500) ·청소년(" 1,000/ " 500) ·어린이(" 1,000/ " 500) 년 월 일 남원시장 ※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	2cm	6cm	12cm
NO. _____ 곤충온실 입장권(보관용) ·어 른(개인1,000/단체500) ·청소년(" 1,000/ " 500) ·어린이(" 1,000/ " 500) 년 월 일 남원시장	절 취 선	입장권 NO. _____ (대표사진) ·어 른(개인1,000/단체500) ·청소년(" 1,000/ " 500) ·어린이(" 1,000/ " 500) 년 월 일 남원시장 ※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					
2cm	6cm	12cm					

이 용 권 (제7조 관련)

5. 통합입장권

20cm	
6cm 편 철 부 분	NO. _____
	전시관 입장권(보관용)
	·어 른(개인5,000/단체 3,000) ·청소년(" 4,000/ " 2,000) ·어린이(" 3,000/ " 2,000)
	년 월 일
남원시장	
2cm	
절 취 선	전시관 입장권 NO. _____
(대표사진)	
·어 른(개인5,000/단체 3,000) ·청소년(" 4,000/ " 2,000) ·어린이(" 3,000/ " 2,000)	
년 월 일	
남원시장	
※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	
12cm	

[별표 2]

시 설 이 용 료 (제10조 관련)

구 분	이 용 료(원)			비 고
	4시간	8시간	1일	
다목적강당	100,000	150,000	200,000	·냉·난방 시설 : 1회 30,000원 ·1회 기준 4시간 이내

구 분	이 용 료(원)			비 고
	4시간	8시간	1일	
기획 전시실	50,000	100,000	150,000	·냉·난방 시설 : 1회 30,000원 ·1회 기준 4시간 이내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<신설> 2. ~ 4. (생략) 5. "시설사용료"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 6.·7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" <u>전시관</u> "이란 전시관, 곤충온실, 물놀이터,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,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. 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 6. ----- 인 용하는 ----- -----. 7.·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제5조(개관 및 휴관) ① (생략)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략) <신설> 2. (생략) ③ (생략)	제5조(개관 및 휴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설날과 추석날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입장료, 체험시설 이용료 등) ① 전시관 입장료,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 1로 하고, <u>입장</u>	제7조(입장료, 체험시설 이용료 등) ① ----- ----- <u>입장</u>

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
<후단 신설>

② (생략)

제8조(입장료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
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
다.

1. ~ 11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2. (생략)

<신설>

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
되,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
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
수 있다. 다만, 시설물의 점검
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
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입장료 감면) ① 시장은 다
음 ----- 경우는 입
장료를 면제한다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단체 입장객 20명 초과 시
인솔자 1명

13.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
험·휴양시설, 백두대간 생태
관광 숙박시설, 백두대간 국민
여가캠핑장 당일 숙박 이용객

14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장료
를 할인할 수 있다.

1. 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
원항공우주천문대의 당일 입
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별
표 1과 같이 할인 요금을 적용
한다.

제10조(시설 사용료 등) ① 전시

관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
② 시설 사용권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국민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2조(요금표 등의 게시) 시장은 전시관 입장료, 체험시설 이용료와 시설사용료를 매표소 등
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시설 이용료 등) 전시관을

방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. 다만,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국민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2조(요금표 등의 게시) -----

-- 시설 이용료-----

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
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설사용의 예약 및 반환)

① 시설사용 예약자는 예약 후
3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지정
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당일
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
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
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
있다.

1.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
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
게 된 경우 : 전액
2.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
를 취소한 경우 : 전액
3.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
를 취소한 경우 : 80퍼센트
4.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
를 취소한 경우 : 50퍼센트
5.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
일이 지날 때까지 사용허가
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: 미반
환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인정

-----.

제13조(시설이용의 예약 및 반환)

① 시설이용 -----
----- 이용료를 신용
카드, 계좌입금, 현금 중 하나의
방법으로 납부--- 납부하여야
--.

② -----

----- 환불-----
--.

1. -----
----- 이용-----
----- 전액 환불
2. 이용일 ----- 이용자가
취소하였을 --- 전액 환불
3. 이용일 ----- 이용자가
취소하였을 --- 80퍼센트 환
불
4. 이용일 ----- 이용자가
취소하였을 --- 50퍼센트 환
불
5. 이용 당일 취소 및 이용일이
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
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: 미 환
불

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4조(사용제한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이용제한) ① -----

----- 이용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이용 -----

② ----- 이용을 -----

-----.

남원시 공고 제2018-879호

『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5월 17일

남 원 시 장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이용료 및 이용시간 조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입장료 조항 삭제 (안 제6조)

나. 이용시간 및 시설이용료 개정 (안 제7조, 안 별표 2)

- 트리하우스 이용시간 변경 : 당일 14시~다음날 12시
- 시설이용료 인하 및 요금 신설

구분	기준	운영수	기준 인원	이용료(원)		비고
				주중	주말·공휴일	
트리 하우스	1일	8동	4명	70,000	100,000	주중 :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(단,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.) 주말 :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휴일 : 공휴일 전날 ※ 공휴일은 「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캠핑장	1일	6면		20,000	20,000	

다. 이용의 예약 및 반환규정 개정 (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산림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산림과 백두생태담당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(063-620-6715), 이메일(cheesedog@korea.kr), 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(☎063-620-57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
 2.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부. 끝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관한 의견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. 5. .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 : 산 립 과 장

1. 개정이유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이용료 및 이용시간 조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입장료 조항 삭제 (안 제6조)

나. 이용시간 및 시설이용료 개정 (안 제7조, 안 별표 2)

- 트리하우스 이용시간 변경 : 당일 14시~다음날 12시
- 시설이용료 인하 및 요금 신설

구분	기준	운영수	기준 인원	이용료(원)		비고
				주중	주말·공휴일	
트리 하우스	1일	8동	4명	70,000	100,000	·주중 :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(단,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.) ·주말 :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
캠핑장	1일	6면		20,000	20,000	·공휴일 : 공휴일 전날 ※ 공휴일은 「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다. 이용의 예약 및 반환규정 개정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5. . ~ 2018. 6. . 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운영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 제목“(시설 사용료 등)”을“(시설 이용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사용료를”을 “이용료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용료의”를 “이용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”을 각각 “이용”으로, “10:00”을 “12:00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2층 교육장의 사용 기간은 사용”을 “명상실의 이용 기간은 이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료”를 “이용료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”를 “시설 이용료”로, “매표관리소”를 “관리사무소”로 한다.

제11조 제목“(사용의 예약 및 반환)”을“(이용의 예약 및 반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단, 당일 현장 이용자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이용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(단, 이용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)에 이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제4항(중전의 제2항)제1호 중 “사용”을 “이용”으로, “전액”을 “전액 환불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용일”을 “이용일”로, “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”을 “이용자가”로, “전액”을 “전액 환불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용일”을 “이용일”로, “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”을 “이용자가”로, “80퍼센트”를 “80퍼센트 환불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사용일”을 “이용일”로, “취소한”을 “이용자가 취소하였을”로, “5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 환불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사용”을 각각 “이용”으로, “미 반환, 단,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.”를 “환불 불가”로 한다.

제12조 제목 “(사용제한)”을 “(이용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“사용”을 각각 “이용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시 설 이 용 료

구분	기준	운영수	기준 인원	이용료(원)		비고
				주중	주말·공휴일	
트리 하우스	1일	8동	4명	70,000	100,000	·주중 :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(단,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.) ·주말 :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·공휴일 : 공휴일 전날 ※ 공휴일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캠핑장	1일	6면		20,000	20,000	

구 분	이용료(원)			비 고
	4시간	8시간	1일	
명상실	100,000	140,000	210,000	·냉난방 시설 1회 30,000원 ·1회 기준 4시간 이내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업무 및 기능) 체험·휴양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3조(업무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운영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6조(입장료 등) ① <u>체험·휴양 시설의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</u></p> <p>② <u>체험·휴양시설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.</u></p> <p>③ <u>체험·휴양시설의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<u>국민 및 그 수행자</u></p> <p>2. <u>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</u></p> <p>3. <u>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</u></p> <p>4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에 따른 <u>1~3급 장애인(동반 보호자 1명 포함)</u></p> <p>5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</u></p>	<p><삭제></p>

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
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
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
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
7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
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
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

8.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
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
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되는 5.18 민주 유공자와 그
유족

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
따른 수급자

10.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
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
족구성원

1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
는 공무원

12. 남원시민임을 확인 할 수
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
를 제시하여 남원시민으로 인
정되는 사람

제7조(시설 사용료 등) ① 체험·
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하우스

제7조(시설 이용료 등) ① -----

스 및 2층 교육장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체험·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
② 트리하우스를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, 사용 당일 14:00부터 다음날 10:00까지로 한다.

③ 2층 교육장의 사용 기간은 사용 당일 10:00부터 익일 09:00까지로 한다.

④ 시설물 사용권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.

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
제9조(요금표 게시) 시장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관리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의 예약 및 반환) ①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신청 후

----- 이용료 -----

----- . -----

----- 이
용료의 -----.

② ----- 이용 -----
----- 이용 -----
----- 12:00 -----

③ 명상실의 이용 기간은 이용

-----.

<삭 제>

⑤ -----

----- 이용료 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요금표 게시) ----- 시설
이용료 -----
----- 관리사무소 -----
-----.

제11조(이용의 예약 및 반환)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(이

3일 이내에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전액
2.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: 전액
3.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

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단, 당일 현장 이용자는 예외로 한다.

② 이용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(단, 이용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)에 이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
④ -----

--.

1. -----
----- 이용-----
----- 전액 환불
2. 이용일 ----- 이용자가 -----

----- 전액 환불
3. 이용일 ----- 이용자가 -----

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
 경우 : 80퍼센트

4.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
 우 : 50퍼센트

5. 사용 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
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
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: 미 반
환, 단,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
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
있다.

③ (생략)

제12조(사용제한) ① 시장은 다음
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
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
 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
 단되는 경우

② (생략)

 ---- 80퍼센트 환불

4. 이용일 ----- 이용자가
취소하였을 -- 50퍼센트 환불

5. 이용 ----- 이용-----
 ----- 이용-
 ----- 환불
불가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2조(이용제한) ① -----

 ----- 이용-----
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이용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